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07
----------	------

2025년 12월 1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박영한 의원 (찬성자 26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10월 20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10월 23일
- 라. 상 정 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영한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외에도 ‘러닝 순찰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만 있는 실정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주민참여 순찰대 관련 시장의 책무, 활동, 연계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5.10.28 ~ 11.1.)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체 계	주 요 내 용
조례명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제1조(목적)	- 서울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주민참여 순찰대’를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주민참여 순찰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노력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나열 및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 위하여 노력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제6조(지원)	-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위안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 위해 자치구,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
부 칙	- 공포일부터 시행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한 이후 ‘안전한 서울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1호 사업으로, 2022년 5월 강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음.

‘반려견 순찰대’는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에 방법 순찰의 임무를 접목하여 주민참여 치안 및 지역의 방범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시범 운영 중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2022년 7월 말부터 8개 자치구(송파, 서초, 강서, 금천,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에서도 확대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제정(2024.7.15.)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외에도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의 순찰대를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하이킹 순찰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참여 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자치경찰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시민참여의 접근성·보편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5년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 현황 〉

(단위 : 천원, '25.7.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운영 규모	활동 실적
반려견 순찰대	295,776	25개 자치구 1,449팀	경찰서 합동순찰 11회
러닝 순찰대	21,000	강남, 송파, 서대문 55명	경찰서 합동 및 정기 순찰 491회
대학생 순찰대	8,030	14개 순찰대 417명	범죄예방 활동 교육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재인용

1) 조례의 명칭 및 목적(안 제1조)

- 현행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의 제명 및 목적(제1조)은 ‘반려견 순찰대’만을 규정하고 있어,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 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임.
- 이는 ‘특정’했던 주민참여 순찰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주민 참여 순찰활동을 포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반려견 순찰대</u> 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주민참여 순찰대</u> 를----- ----- ----- ----- ----- -.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정의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순찰대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 <u>반려견 순찰대</u> "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	제2조(정의) " <u>주민참여 순찰대</u> "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

<u>책 활동과 방법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u>	<u>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호의 순찰대를 말한다.</u>
<신설>	<u>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u>
<신설>	<u>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u>
<신설>	<u>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u>
<신설>	<u>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를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u>

- 안 제2조는 ‘주민참여 순찰대’를 정의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반려견, 러닝, 대학생 순찰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호에서 ‘그 밖의 순찰대’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두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활동을 포용하기 위한 유연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원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그 밖의 순찰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예산 지원 시 자의적 판단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겠음.

-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 밖의 순찰대’를 지정하거나 인정할 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통제 장치를 시행규칙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열거하고 있는 순찰대의 정의에 있어서 ‘정기적’의 기준(예: 주 1회 이상)이나 ‘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예: 최소 인원)이 없어 지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규모 동호회나 비공식적 모임의 난립으로 이어져 체계적인 관리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서 각 순찰대의 인정 요건(최소 인원, 활동 주기, 등록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조제목 개정(안 제3조~제7조)

- 안 제3조~제7조는 현행 ‘반려견 순찰대’를 ‘주민참여 순찰대’로 조제목을 개정하는 것임.
- 안 제6조는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복, 장비,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순찰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맞춤형 지원 기준이 부재하여 획일적으로 지원 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개정안 제6조(지원)에 따라 ‘러닝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연간 7천 1백만 원의 추가 재정 소요만을 산정하고,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는 기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조례의 제명이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이 포괄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기존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나 대학생 순찰대 역시 활동 범위나 인원 확대 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치안 정책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러닝 순찰대’ 등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순찰대’ 지정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박영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용균,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허 · 훈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외에도 '러닝 순찰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만 있는 실정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 · 관리 (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주민참여 순찰대 관련 시장의 책무, 활동, 연계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

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6조(지원)	○	러닝 순찰대 지원 관련 재정소요액 발생(반려견 및 대학생 순찰대는 기추진 사업 ¹⁾ 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확인결과 별다른 확대계획이 없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총 355,000천원 소요 예상(연평균 71,000천원 소요)

※ 해당 추계액은 러닝 순찰대 사업의 총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금액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러닝 순찰대 지원 관련 재정소요액(안 제6조)

나. 전제

- ❶ (활동용품) 용품단가(P) × 지급대상(Q)
 - (용품단가) 조끼·티셔츠·LED 경광봉 등 지급비용 145,500원(P) 가정
 - (대 상) 순찰대원 총 220명(Q)을 가정
- ❷ (홍 보) 모집포스터 제작 및 홍보 2,000천원 가정
- ❸ (현장교육) 인당 20천원(P) / 10개 경찰서(Q₁) / 25명 대상(Q₂) / 총 2회 실시를 가정
- ❹ (앱사용료) 앱 서비스 및 러닝순찰 대시민 이벤트 23,000천원 가정
- ❺ (시 상) 단체 및 개별 시상으로 나누어 시상
 - (단체시상) 시상관련 비용 200천원(P) / 5개 단체(Q) / 2회(T) 가정
 - (개별시상) 시상관련 비용 100천원(P) / 10명 대원(Q) / 2회(T) 가정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발생
- (미 고 려) 향후 사업 추가확대 여부,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 325,206천원

① 반려견 순찰대 관련 예산 : 294,676천원

② 대학생 순찰대 관련 예산 : 8,030천원

③ 러닝 순찰대 관련 예산 : 21,000천원(시범사업) → 다만, 2026년부터 확대예정(추계대상에 해당)

라. 방법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선문의 및 제공자료²⁾ 등을 토대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355,000천원(연평균 71,000천원 추가소요)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라닝 순찰대 운영 재정소요액(안6조)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소계(a)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55,000

※ 연간 총 소요비용은 71,000천원으로 이는 기추진사업인 21,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해야하나 해당 규정이 현행 같은 조례와는 달리 라닝 순찰대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총 소요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계함

4. 덧붙이는 의견

- 본 추정액은 2026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서만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사업확대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훈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2) [예산액과의 정합성 제고 차원] 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정책적 영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추계액과 향후 예산액간 정합성(추계제도 본연의 목적 부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제공자료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러닝 순찰대 지원 관련 재정소요액(안 제6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355,000천원(연평균 총 소요비용 71,000천원 × 5년)

나. 연평균 총 소요비용 = 71,000천원

$$= \text{① 활동용품} + \text{② 홍보} + \text{③ 교육} + \text{④ 앱서비스} + \text{⑤ 시상}$$

① 활동용품 지급비용 ≒ 32,000천원

$$= \text{용품단가(P)} \times \text{지급대상(Q)}$$

$$= 145,500\text{원} \times 220\text{명}$$

② 모집포스터 제작 및 홍보비용 = 2,000천원

③ 현장교육 관련 비용 = 10,000천원

$$= 1\text{인당 교육관련 비용(P)} \times \text{해당 경찰서(Q}_1\text{)} \times \text{해당인원(Q}_2\text{)} \times \text{실시횟수(T)}$$

$$= 20\text{천원(1인 기준)} \times 10\text{개 경찰서} \times 25\text{명} \times 2\text{회}$$

④ 앱 서비스 및 러닝순찰 대시민 이벤트 관련 비용 = 23,000천원

⑤ 시상관련 비용 = 4,000천원

$$= \{\text{단체시상 단가(P)} \times \text{단체(Q)} \times \text{횟수(T)}\} + \{\text{개인시상 단가(P)} \times \text{대원(Q)} \times \text{횟수(T)}\}$$

$$= \{200\text{천원} \times 5\text{개 단체} \times 2\text{회}\} + \{100\text{천원} \times 10\text{명} \times 2\text{회}\}$$

〈 직전년도 대비 러닝순찰대 관련 재정소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기추진사업(A)	확대예정 사업(B)	증감액(B-A)
① 활동용품	12,000	32,000	20,000
② 홍 보	2,000	2,000	0
③ 교 육	2,500	10,000	7,500
④ 앱사용료	-	23,000	23,000
⑤ 시 상	2,500	4,000	1,500
기 타	2,000	-	△2,000
합 계	21,000	71,000	50,000

주 : 기추진사업(2025년 기준 예산)과 확대예정 사업(2026년 이후)의 차이는 50,000천원으로 기편성 예산 외 추가 재정소요액에 해당함

자료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정분석과 재작성